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 체제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7조에서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와 제5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5조제2항).

나.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표현하고 있어, 교육감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함(안 제3조제2항).

다. 타시도나 시군의 위원회와 구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5조제2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u>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u>교육감과 시장·군수</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방법) ① (생략)</p> <p>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u>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p>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⑤ (생략)</p>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 ----- <u>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u>----- ----- ----- 1.~3. (개정안과 같음)</p> <p>② ----- -----<u>충청북도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p> <p>제5조(지원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u>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u>----- -----</p>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 <u>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u> ----- ----- ----- ②~⑤ (개정안과 같음)</p>